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9. 12. 24.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1일
-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17, 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 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375호, 2009.3.27. 공포 ·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여 도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4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
- 별표 2에서 규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기준을 삭제하고, 본문에 규정함(안 제6조제4항)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함.

3.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함(안 제2조제4호)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장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함.
 -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기준을 신설(안 제6조제4항)
 - [별표 2]에서 규정했던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기준을 삭제하고 본문에 규정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로,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공립 및 사립의 각급학교"로 각각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 가. 영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다.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 라. 영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 고등기술학교
6. 각종학교

제3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별표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와 다르게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의 급지가 전출학교의 급지보다 상위 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 학교의 수업을 전기(前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수업료·입학금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 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4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

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1를 별표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0조제1항제6호 내지 제 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동시행령 제 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 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징수방법) ①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p> <p>②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p> <p>③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 한다.</p> <p>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 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차액을 징수한다.</p>	<p>다.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라. 영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p> <p><u>5. 고등기술학교</u></p> <p><u>6. 각종학교</u></p> <p>제3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별표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와 다르게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p> <p>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의 급지가 전출학교의 급지보다 상위 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차액을 징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p> <p>④ <u>재입학</u>,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p> <p>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p> <p>제4조(수업료 · 입학금의 면제 · 감액)</p> <p>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② <u>휴학</u> 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p> <p>③ 학교의 수업을 <u>전기</u> 또는 <u>전월</u>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u>당해</u> 기 또는 <u>당해</u>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p> <p>④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p>	<p>한다.</p> <p>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p> <p>④ <u>재입학이나</u>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p> <p>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p> <p>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p> <p>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② <u>휴학자에게는</u>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p> <p>③ 학교의 수업을 <u>전기(前期)</u> 또는 <u>전월(前月)</u>의 <u>전기간(全期間)</u>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u>해당</u> 기 또는 <u>해당</u>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p> <p>④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p>

현 행	개 정 안
<p>한다.</p> <p>제5조(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u>당해</u> 기 또는 <u>당해</u>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p> <p>②학교의 장은 <u>제1항의 규정에</u> 불구하고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u>학기개시</u> 전 <u>50일</u>이내로 할 수 있다.</p> <p>③<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u>, 학교의 장은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u> <u>장학금</u> 또는 <u>학비보조금</u> 등을 <u>교부받아</u> 수업료를 납부하는 <u>학생에 대하여는</u>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u>장학금</u> 또는 <u>학비보조금 등의</u>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p>	<p>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 한다.</p> <p>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u>해당</u> 기 또는 <u>해당</u>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p> <p>② 학교의 장은 <u>제1항에도</u> 불구하고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u>학기 개시</u> 전 <u>50일</u> 이내로 할 수 있다.</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학교의 장은 <u>장학금</u> 또는 <u>학비보조금</u>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u>학생에게는</u>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u>장학금</u> 또는 <u>학비보조금 등의</u>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p>
<p>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p> <p>②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설립자가 동일한 <u>하위급지의</u>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p>	<p>제6조(수업료 · 입학금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p> <p>②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설립자가 동일한 <u>하위 급지의</u>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p>

현 행	개 정 안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u>별표 2의 기준에 따라</u>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 빠 한다)에는 제4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u>의하여</u>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 법령에 <u>따라</u>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u>재학중인</u>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u>재학 중인</u>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u>재학중인</u>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u>재학 중인</u>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 ·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u><신 설>(별표 2를 본문에 규정함)</u>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가산금 등) ①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다.</p> <p>②퇴학처분을 당한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③학교를 자퇴한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해당 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p> <p>2. 해당 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p> <p>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다.</p> <p>② 퇴학처분을 당한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③ 학교를 자퇴한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관계법령 빌췌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제10조 (수업료등)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 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375호, 2009.3.27, 일부개정]

제105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09.3.27]